농협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 : 2016-1736

심의일: 2016.11.16

퇴직연금 업무를 위한 『퇴직연금 정기예금』특약

제1조 약관의 적용

"퇴직연금 정기예금" (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거래에는 이 특약이 적용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치식 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예금종류

이 예금과목은 "일반정기예금"으로 합니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퇴직연금사업자로 합니다.

제4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원 이상으로 합니다.

제5조 계약기간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또는 5년으로 합니다.

제6조 이자

- ① 이 예금은 예금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이율을 적용합니다.
- ② 이 예금의 이자는 만기일에 셈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제7조 중도해지이자

- ① 만기일전 지급 청구한 때에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만기일 전 예금주가 청구할 때에는 예금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일 또는 재예치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특별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합니다.

- 1.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의 사유(급여이전 포함)
- 2.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3)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4)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5)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6)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3. 퇴직연금의 특별중도해지 사유
 -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시
 - 2)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자의 파산 또는 폐업
 - 3)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4) 수탁자의 사임
- 4. 자산관리기관 기준 동일 사업자 내 계약이전
- 5. 자산관리기관 기준 동일 사업자 내 제도전환
- 6. 가입자 사망
- 7. 연금 지급
- 8.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 질병,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형IRP에 한함)
- 9. 가입자의 해외이주(개인형 IRP에 한함)

- 10. 퇴직연금 계약에 의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이 상품에서 인출하는 경우
- ③ 제2항의 특별중도해지이율은 예금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 까지의 기간에 따라 다음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제10호에 의한 중도해지이자는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약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1. 3개월 미만 : 3개월제 이율

2. 3개월 ~ 6개월 미만 : 6개월제 이율

3. 6개월 ~ 1년 미만 : 1년제 이율

4. 1년 이상 : 경과기간별 이율

제8조 재예치

- ① 예금주가 요청하는 경우, 이 예금의 만기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재예치 금액으로 하여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재예치하며, 재예치이율은 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신규시 재예치를 신청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만기시마다 별도의 의사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약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한 운용지시서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상기 ①에도 불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예치 하지 않습니다.
 - 1. 예금주가 재예치 의사없음을 사전에 통지한 경우
 - 2.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15조의4」 제3호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제9조 분할해지

- ① 이 예금은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별로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
- ③ 만기일전 분할 해지하는 경우 분할해지금액에 대한 이자는 제7조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10조 기 타

이 예금은 퇴직연금신탁 실시를 위한 자금운용상품으로 **통장발급** 및 질권설정, 담보제공이 불가합니다.

<u>부</u> 칙

제1조 (시행일) 이 특약은 2010년 12월 31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재예치일부터 변경내용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특약 제8조 재예치는 2011년 11월 21일 이후 신규가입분부터 적용합니다.

<u>부 칙</u>

제1조 (시행일) 이 특약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특약은 2016년 1월 18일 이후 신규 또는 재예치가입분부터 적용합니다.

<u>부</u> 칙

제1조 (시행일) 이 특약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